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9. 29 선고 2019가단1072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63334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9. 29 선고 2019가단1072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혜경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욱

변 론 종 결 2020. 8. 11.

판 결 선 고 2020.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 C센터장 D은 2019. 7. 5. 원고의 대표이사 E을 만나 양파 판매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가 작성하여 온 2019. 7. 1.자 양파판매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에 수기로 양파 ‘대’자 1망 당 단가에 관하여 “6500원, 6000원, 5800원, 5500원”, 양파 수량에 관하여 “60,000망(예정)”, 대금 지급에 관하여 “7/8 월 5백, 7/10 수 계약서 4천, 2만 개 5천, 잔금 9/1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날인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5.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6. 24.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양파 100,000망을 G조합 구매단가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9. 7. 8. 원고 명의의 계좌로 위 다.항 기재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바. 원고는 2019. 7. 14.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는 2019. 7.초경 계약금 5,000,000원, 매수단가 6,000원으로 하는 양파 60,000망을 피고가 공급하고 원고가 매수하는 양파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파 출하 때 필요한 인부를 제공받기 위하여 함양군 H 소재 인부용역을 맡고 있는 I과도 추가적으로

용역계약을 15,000,000원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을 2019. 7. 8.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단되었고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략) 이에 원고는 2019. 7. 25.까지 원래 계약대로 이행해주길 바라고 만약 위 기한의 경과 시에는 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배액의 위약금과 위 계약을 기화로 인한 제3자에게 공급하지 못한 특별손해 및 용역계약의 특별손해를 추가적으로 받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협의 당시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어, 양파대금은 J조합 수매단가로 하고, 수량은 60,000망으로 하며, 계약금 50,000,000원 중 5,000,000원은 2019. 7. 5. 계약 체결 당시, 5,000,000원은 2019. 7. 8., 나머지 40,000,000원은 계약서 작성 시, 중도금 50,000,000원은 양파 20,000망 출하 시, 잔금은 2019. 9.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파매매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전매이익 50,000,000원, 전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76,920,000원(= 창고비용 61,920,000원 + 상차비용 15,000,000원), 전매계약 이행을 위해 원고가 준비한 양파 41,280망의 운반비용, 재작업비 등의 손해 20,000,000원 합계 146,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5, 1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계약서의 서명날인에는 이르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중요 사항인 양파매매대금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초안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2019. 6. 7.자 계약서(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되었다)에는 매매대금에 관하여 “추후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잔금 지급시기에 관한 부분에 “수매단가 결정 이 3일 내에”라고 되어 있고, 당사자들의 날인도 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가 J조합 수매단가를 매매대금으로 할 의사였다고 할 것임에 비해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는 수매단가를 매매대금으로 한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날인도 되어 있지 않아 위 2019. 6. 7.자 계약서와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19. 7. 14.자 내용증명에서 원고 스스로 매매대금을 6,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J조합 수매단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2019. 7. 5.자 녹취록(갑 제5호증)에 의하면 D은 “계약서를 써야, 계약금을 받아야 양파를 들고 가시잖아?”라고 말하였고, 2019. 7. 6.자 녹취록(갑 제10호증)에 의하면 E은 “내가 오후에 정확히 답을 내려 드릴게.”라고 말하였으며, D이 “그럼 뭐 계약하죠.”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E은 다시 “이제 조율이 필요하니까는.”이라고 말하여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초사실에서 본 계약 교섭 경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양파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